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필레 의원)

의안 번호	20-125
----------	--------

발의년월일 : 2020. 8. .

발 의 자 : 이필레, 강명숙,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김진천,  
이홍민, 정혜경

## 1. 제안이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 포함

## 3.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8. 28. ~ 2020. 9. 1.

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생으로서”를 “학생(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학생으로서</u>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① ----- ----- ----- 학생 (<u>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으로서 -----.</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외국인 학생 포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관내 중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조사시 10명 내외로, 관외 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을 감안하더라도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 교육부 인가학교 재학 신입생 대상

※ 2020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 78,05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오재은
연락처	02-3153-8954